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  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 
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11. 2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『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 
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254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과 심의 시 이해관계  
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 
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5조제1항)

나. 교통민원신고 심의시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 
있는 위원은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 신설(안 제7조제4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 제한과 교통민원신고심의 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  
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시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.
- 그 동안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.

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.

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 하였으며,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그 밖에 조문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

**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**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